

#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유사·중복 과제의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안 제출시 유사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(안 제9조제3항)
- 나.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(안 제14조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2. 6. 9.~2022. 6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첨

##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조직담당관”을 “시정연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6항 중 “조직담당관”을 “시정연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학술용역실명제)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

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

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.

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
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
3.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
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,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.</p> <p>1. 내부위원 : <u>조직담당관</u>, 예산 담당관, 평가담당관, 기술심사 담당관</p> <p>2. 3. (생 략)</p>	<p>제3조(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시정연구담당관</u>----- ----- 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회의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심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<u>조직담당관</u> 학 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,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 자가 된다.</p>	<p>제6조(회의) ① ~ ⑤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⑥ ----- ----- ----- <u>시정연구담 당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의안제출) ①·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의안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 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 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 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</u></p>

<신 설>

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4조의2(학술용역실명제)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.

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.

1.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
2.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
3.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
4.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통일하는 것으로,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김대식(02-2133-7827)